

韓日 技術士制度 및 運營

鄭 昞 珉*

(韓國技術士會常任理事)

1. 技術士制度

韓國이나 日本에서 施行되고 있는 技術士法에 依하여 그資格을 獲得하고 科學技術處(廳)에 登錄되고 있는 兩國技術士數는 韓國이 293名(72年

末 現在)이고 日本은 8,227名(71年末現在)으로 約 30對1의 比率이되고 있다. 兩國이 各各 技術士法의 制定을 基點으로 技術士制度가 實行되고 있는중이며 主要한 法上의 比較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主 要 比 較 要 旨

技術士法內容 同 施 行 令	韓 國	日 本	備 考
1. 法의 制定 (技術士輩出年數)	1963. 11. 11 9年	1957. 5. 20 16年	7年差
2. 目 的	技術士資格을定하고 業務適正, 科學技術向上과 國民經濟發展에 寄與	同	同一함
3. 定 義	科學技術에 關한 高等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要하는 業務를 行하는 者. (計劃, 研究, 設計, 分析, 調查, 試驗運營, 施工, 評價, 指導, 監理等의 技術業務)	同	同一함
4. 本試驗受驗資格	豫備試驗合格後 5年 免除된 날 부터 7年以上の 實務經歷이 있는 者	同	同一함
5. 科學技術部門	13個部門(農業, 水產, 林業, 電氣, 機械, 化工, 纖維, 金屬, 鑛業, 船舶, 航空機, 建設 應用理學)	17個部門(機械, 船舶, 航空機, 電氣, 化學, 纖維, 金屬, 鑛業, 建設, 水道, 衛生工學, 農業, 林業, 水產, 生産管理, 情報處理, 應用理學)	日本은 水道, 衛生工學, 生産管理, 情報處理를 建設 應用理學에서 分離시킴 電子計算도 分離豫定
6. 技術士의 活用	①國家 公共團體及政府管理企業 體가 營爲하는 重要한事業 ②長期經濟開發事業 ③外資導入事業中 重要한事業 ④其他 特히 重要한 公益事業	없음	
7. 登 錄	科學技術處에 登錄	科學技術廳에 登錄	
8. 技術士會	韓國技術士會를 設立	日本技術士會를 設立	
9. 技術士管理委員會	技術士管理 및 審議	技術士審議會를 設置	

韓日兩國技術士法을 比較하여 보면, 全文이 大

同小異하다고 하나, 法內容上 主要한 差異點은 韓國技術士法第25條에 있는 技術士의 活用に 關

* 技術士：(生産管理)

한 條項이며, 韓國의 境遇 科學技術處長官이 特定한 事業을 指定하여 技術士의 活用을 命할 수 있음이 明文化되어있는데 比하여 日本의 境遇에 는 技術士의 活用條文이 明文化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其他關係法에는 技術士의 活用을 爲한 條文이 明示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가지는 科學技術部門의 分類에 있어 韓國의 境遇 母法上에 明示되어 時代潮流에 따라 多角의 分類가 어렵게 되어있는데 比하여, 日本의 境遇 技術士法施行細則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有機適切한 分類가 可能한 것이다.

2. 制度運營

兩國모두가 技術士制度의 能率의인 活用을 爲하여 政府當局에서 相當히 研究努力中에 있으나 韓國의 境遇 外資導入法에 依한 技術性 檢討를 爲한 活用に 法條文에 明示되어 있을 뿐이고(現在는 事實上 有名無實化) 또한, 技術士資格者가 建設技術免許를 無試驗獲得(土木, 建築, 機械) 할 수 있는 特惠程度가 있을뿐임에 比하여 日本의 特惠實例를 다음에 들어본다.

(1) 消防法및 同法施行令

- 가) 免許種類, 甲, 乙種消防設備士資格
- 나) 消防用設備工事및 整備內容, 消火柱스프링쿠라, 氣泡性不燃性케스, 蒸發性, 粉末, 自動火災豫報等關係器具(消防栓~設備等)
- 다)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하여 本試驗에 合格하고 登錄한者는 實技試驗免除

(2) 建設業法 및 同法施行令

- 가) 綜合工事業者의 登錄및 建設業登錄資格
- 나) 技術檢定の 學科 또는 實地試驗의 免除
- 다)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한 技術士(建設및 機械, 電氣, 水道, 衛生工學) 本試驗에 合格하고 登錄한 者를 認定함

(3) 下水道法및 同法施行令

- 가) 設計및 工事監督管理者의 資格

나)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한 本試驗合格者中 關係該當分野 技術士를 認定함

(4) 宅地造成等規制法 및 同法施行令

- 가) 設計資格
- 나)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하여 建設部門本試驗에 合格한 者를 認定함

(5) 中小企業指導法

- 가) 技術指導擔當者
- 나)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한 本試驗合格者(該當部門)를 認定함

(6) 都市計劃法 및 同法施行規則

- 가) 設計者의 資格
- 나)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한 本試驗合格者를 認定함(建設省長官이 定하는 部門, 建設, 水道, 衛生工學)

(7) 特定工場에 있어서의 公害防止組織의 整備에 關한 法律및 施行令

- 가) 公害防止管理者의 資格
- 나) 上記資格은 技術士法第2條에 規定한 技術士를 認定함(公害關係要件에 따른 關聯分野의 技術士)

(8) 建設은진 단트登錄規程

- 가) 登錄資格
- 나) 上記資格은 技術士法에 依하여 本試驗에 合格하고 該當部門에 登錄한者를 認定함

以上과같이 各種 技術關係에 聯關된法令들에는 만드시 登錄또는 從事資格에 技術士資格所持者가 優先的으로 參與되고 있는點이 技術士活用을 現實化하고 社會的인 科學技術發展에 顯著하게 寄與할 수 있는 源動力이되고 있음을 充分히 알 수 있다. 根本的인 技術用役의 內的充實化와 外的인 效果를 爲해서나, 將來性을 爲해서도 이를 綜合的으로 集中化한 技術士活用在 切實히 要請되는 우리나라의 技術用役育成法이 하루 速히 發効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